

**군용비행장 ·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92
----------	-------

발의연월일 : 2026. 9. 28.

발 의 자 : 이상희 · 엄태영 · 안철수
고동진 · 박준태 · 최은석
한지아 · 김성원 · 김승수
최수진 · 김태규 · 박수영
박성훈 · 조승환 · 정동만
김장겸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 · 제2종 ·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 고시하고,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의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생활권에 있는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의 경계에 따라 분리되어 인접한 지역에서 유사한 정도의 소음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주택의 밀집 · 연접 정도 및 지형 · 지물의 경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 생활권 지역을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음피해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2항 신설 등).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주택의 밀집·연접 정도, 지형·지물의 경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 생활권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생략) <u><신설></u>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현행과 같음) <u>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주택의 밀집·연접 정도, 지형·지물의 경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 생활권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음대책 지역의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다.</u>
<u>②</u> (생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u>③</u> (생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u>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